

수출현안 · 수입제도 모니터링(대만 8월분)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 (통관/검역/라벨링★/수출현안)

□ 「食品及相關產品輸入查驗辦法部分條文修正草案總說明(식품 및 관련 제품수입 검사 방법 부분 수정 초안 총 설명)」

○ 문서발송일자 : 2017년 8월 11일, 대만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 공고 -
(문서번호 : 部授食字第1062001602號公告)

○ 규정의 주요내용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규정 중 위생복지부 공고의 식품, 유전자변형식품 원료, 식품첨가물, 식품기구, 식품용기와 포장 및 식품용 세제를 수입 시 세관 전용 화물 분류표에 의거 위생복지부에 수입검사 신청 및 제품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동 규정 제33조 제3항에 의거 대만위생복지부는 수입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 규정에 의거한 완벽 조치를 위해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방법」을 수정 초안 발표함

1. 전자방식으로 검사 문건 제공을 추가함(제4조 조항 수정)
2. 국한된 제품정보 사전신고 제도는 제품의 모든 자료를 추적할 수 없어 현행 제5조를 삭제함
3. 컨테이너 입고 시 개봉 후 검사 진행 규정을 추가(제17조 조항 수정)
4. “상품 선행 방출 확약 조건” 제출 규정 추가 제정(제19조 및 19조 1항 수정)
5. “상품 선행 방출 보증금 납입 확약 조건” 추가 제정 및 보증금액 산출 기초 금액의 명칭 수정(제23조 수정)
6. “보증금 반환 검사신청 의무인 조건” 추가 제정(제21조 항목 수정)
7. 검사신청 의무인의 상품 검사결과 대한 재검사 신청 기한 수정(제23조 수정)

수정 조항	현행 조항
제 4 조 검사신청 의무인은 아래 문건을 구비하여 검사 기관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1.검사 신청서 2.제품 자료표 3.수입신고서 사본 4.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이하“식품약품서”)에서 지정한 문건. 검사 기관은 본 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검사신청의무인에게 이전 항목 외 기타 필요한 문건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검사신청의무인은 이를 회피, 방해 또는 거절할 수 없다 <u>제1항목 검사 문건은 검사신청의무인이 식품약품서에서 지정한 전자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u>	제 4 조 검사신청 의무인은 아래 문건을 구비하여 검사 기관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1.검사 신청서 2.제품 자료표 3.수입신고서 사본 4.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이하“식품약품서”)에서 지정한 문건. 검사 기관은 본 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검사신청의무인에게 이전 항목 외 기타 필요한 문건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검사신청의무인은 이를 회피, 방해 또는 거절할 수 없다
제5조 (삭제)	제5조 검사 신청 의무인은 검사관에게 수입 제품 정보 사전 신고 작업을 처리하고 검사 기관의 허가 문서를 발부한 제품에 대해 이전 조항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신청할 시 이전 조항 제1항 제2조목 문건의 구비를 면제한다 이전 항목의 허가 문서 유효기간은 2년이다 검사를 신청한 제품과 사전 신고한 제품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검사 기관은 제1항의 허가 문서를 폐지하고 1년간 해당 검사 신청 의무인의 제1항 신청 수리를 중단 한다
제17조 검사의 대조, 샘플 추출은 제품 보관 장소에서 실시한다. FCL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제품에 속하는 경우 집중검사 구역 또는 식품약품서가 허가한 특정 구역에서 실시해야 한다 이전 항목 검사에 대해 검사 신청 의무인은 반드시 협조해야 하고 발체하는 샘플을 지정할 수 없다 <u>본법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식품선행방출확약 접수가 잠정 중단된 업체는 그 제품의 샘플 발체가 어려운 경우 검사 기관은 컨테이너 창고 입고 개봉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u> 전 2개 항목 검역 시 의무인은 검역에 맞춰줘야 하며 샘플의 제품을 지정하면 안 된다	제17조 검사의 대조, 샘플 추출은 제품 보관 장소에서 실시한다 FCL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제품에 속하는 경우 집중검사 구역 또는 식품약품서가 허가한 특정 구역에서 실시해야 한다 이전 항목 검사에 대해 검사 신청 의무인은 반드시 협조해야 하고 하는 발체하는 샘플을 지정할 수 없다
제19조 검사 기관은 테스트 날짜를 5일 초과하고 컨테이너 장치장에서 샘플 발체가 어려우며 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운 제품, <u>화물을 배로 운반 시 부두에 저장 할 공간이 없는</u> 제품은 검사 신청 의무인이 서면 확약서에 보관 책임을 지겠다고 명시한 후 사전 반출 통지서를 발급하여 사전 통관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차수 별 순차 검사에 속하는 제품은 계속해서 잠정 보관해야 한다	제19조 검사 기관은 테스트 날짜를 5일 초과하고 컨테이너 장치장에서 샘플 발체가 어려우며 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운 제품에 대해 검사 신청 의무인이 서면 확약서에 보관 책임을 지겠다고 명시한 후 사전 반출 통지서를 발급하여 사전 통관을 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차수 별 순차 검사에 속하는 제품은 계속해서 장정 보관해야 한다
제19조의 1 수입제품 신고 혹은 유기농 표기 제품은 유기농표기 동의 자료 외 본법을 위반하지 않은 자 검역의무인은 확약서를 체결하여 보관의 책임을 명시한 후 사전반출 통지를 체결후 사전반입을 진행한다	
제20조 검사 신청 의무인이 수입한 제품이 이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 기관이 이전 조항 규정 부합 여부를 심사할 때 보증금 납부를 지시한 후 사전 반출 서약을 허가한다 1.강화 차수 발취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2.감시 검사를 진행하고 기간 내 검사 결과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u>3.검사 신청 의무인은 "선행방출상품신청"이 3개월 초과 되었으나 검사 절차를 다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그 기타 상품의 "선행방출상품신청"을 재차 신청한 자</u> 이전 항목의 보증금에 대해 해당 금액은 제품 <u>세금포함 가격의 2배이다</u>	제20조 검사 신청 의무인이 수입한 제품이 이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 기관이 이전 조항 규정 부합 여부를 심사할 때 보증금 납부를 지시한 후 사전 반출 서약을 허가한다 1.강화 차수 발취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2.감시 검사를 진행하고 기간 내 검사 결과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이전 항목의 보증금에 대해 해당 금액은 제품 CIF 가격의 2배이다

수정 조항	현행 조항
제21조 검사 신청 의무인이 이전 조항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보증금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어음,수표 또는 우편환이어야 한다 제품이 검사에서 규정에 부합하고 수입 허가 통지서를 취득하였거나 검사 불합격 통지서를 제24조 의거 처리 할 시 제51조 제3조목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전 항목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제21조 검사 신청 의무인이 이전 조항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보증금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어음,수표 또는 우편환이어야 한다 제품이 검사에서 규정에 부합하고 수입 허가 통지서를 취득하였거나 본법 제51조 제3조목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전 항목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제23조 수입한 제품이 검사에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검사 기관은 검사 불합격 통지서를 검사 신청 의무인에게 발급한다 검사 신청 의무인은 이전 항목의 통지서를 수령한 당일 부터 15일 이내에 검사 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하고 횟수는 1번으로 제한하며 기존 테스트 실험실에서 기존에 추출한 잔여 샘플로 진행한다 수입한 제품이 이전 항목 검사에 따라 검사하여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잔여 샘플에 대해 재검사 신청 기한 만료 후 소각해야 한다	제23조 수입한 제품이 검사에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검사 기관은 검사 불합격 통지서를 검사 신청 의무인에게 발급한다 검사 신청 의무인은 이전 항목의 통지서를 수령한 부터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검사 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하고 횟수는 1번으로 제한하며 기존 테스트 실험실에서 기존에 추출한 잔여 샘플로 진행한다 수입한 제품이 이전 항목 검사에 따라 검사하여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잔여 샘플에 대해 재검사 신청 기한 만료 후 소각해야 한다
제24조 수입한 제품이 검사에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신청 의무인이 이하 방법 중 하나에 따라 처리한다. 1. 반송 또는 소각 처리 2. 본 법 제17조,제18조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21조 제1항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식품약품서에 기한부 소독,개조를 신청하거나 적절한 안전 조치를 시행한다. 3. 표시가 본 법 제22조,제24조,제26조,제27조,또는 제28조 제1항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식품약품서에 기한부 시정을 신청한다 검사 신청 의무인은 상기 항목 제2조목 또는 제3조목에 따라 제품을 처리하는 경우 식품약품서는 심사 허가 후 통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수입한 제품이 검사에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 이미 사전 반출 서약을 한 제품에 대해서도 검사 신청 의무인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4조 수입한 제품이 검사에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신청 의무인이 이하 방법 중 하나에 따라 처리한다. 1. 반송 또는 소각 처리 2. 본 법 제17조,제18조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21조 제1항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식품약품서에 기한부 소독,개조를 신청하거나 적절한 안전 조치를 시행한다. 3. 표시가 본 법 제22조,제24조,제26조,제27조,또는 제28조 제1항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식품약품서에 기한부 시정을 신청한다 검사 신청 의무인은 상기 항목 제2조목 또는 제3조목에 따라 제품을 처리하는 경우 식품약품서는 심사 허가 후 사전 반출 통지서를 발급하여 통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수입한 제품이 검사에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 이미 사전 반출 서약을 한 제품에 대해서도 검사 신청 의무인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식품약품관리서 공고란 2017.8.11

○ 시사점:

- 대만 식품 통관 검사 시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방법」은 가장 기초가 되는 검사 규정으로 변경 수정된 분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며, 한국 식품의 비관세장벽 해소 및 원활한 식품 수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숙지하여 수입 통관 검사 시 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 「健康食品應加標示事項(건강식품 추가 표기 사항)」 제정 예고

- 문서발송일자 : 2017년 8월 30일, 대만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 공고 -
(문서번호 : 衛授食字第1061301896號公告)
- 제정 의거 규정 : 「健康食品管理法(건강식품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0항
- 주요 내용
 1. 캡슐 및 알약형태의 건강식품인 경우 반드시 용기 포장 상 <주의사항> 중 아래와 같이 기재해야 함
 - (1) “본상품은 약품이 아닌 보건용으로, 환자는 여전히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라는 문구 삽입
 - (2) “제시한 섭취량만 음용하고 과다 투여 시 효과는 없습니다” 문구 삽입
 2. 캡슐 및 알약 형태가 아닌 건강식품인 경우 반드시 용기 포장 상 <주의사항> 중 아래와 같이 기재해야 함
 - (1) “본제품은 보건용이며 의료 효능은 없습니다” 문구 삽입
 - (2) “제시한 섭취량만 음용하고 과다 투여 시 효과는 없습니다” 문구 삽입
 3. 위의 2개 주의사항은 반드시 굵은 글씨로 표기해야하며 글씨체는 기타 문자 및 바탕색과 명확한 구분이 되어야 함
 4. 2018. 1. 1. 이후 건강식품 허가증을 받은 제품은 본 공고의 규정에 따라 시행을 해야 하며, 2017 12. 31 이전 건강식품허가증을 받은 제품은 2018. 06. 30 까지 적용 유예기간으로 준다. 2018. 07. 01 이후부터 제작된 제품은 반드시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함
 5. 본 공고서는 행정원 공고 정보 사이트 [위생 복리법 규검 시스템] 하의 [법규 초안] 사이트 상 또는 식품약품관리서 [공고정보] 하의 [본서공고] 사이트 및 국가발전위원회[공고정책 사이트-중개강] 사이트 (<https://join.gov.tw/policies/>) 에서 확인할 수 있음
 6.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 및 수정 부분을 건의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 이후 익일부터 60일 내 [위생 복리법규 검색 시스템] 혹은 [공공 정책 사이트 참여플랫폼-중개강] 사이트에서 의견 진술 및 문의를 할 수 있음

식품약품관리서 공고란 2017.8.30.

○ 시사점:

- 대만의 건강식품 라벨링 표기 규정이 점차 엄격해짐에 따라 한국산 건강식품 또는 보건의약품 수출 시 위 공고를 숙지하여 수출 시 문제 시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